

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규정

제정 : 2008.12.01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19.07.10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05.01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근거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49조 및 제50조의2와 「동법 시행령」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, 교육부 전문대학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시행계획 및 본 대학교 「학칙」 제26조의3에 의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2조(목적) 전문대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산업체 재직경력자의 계속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3조(신청 및 인가) 본 대학교에서는 전공심화과정 설치·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>

제4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① 본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학사과정의 모집단위와 관련이 있는 모집단위로 하되, 학과 명칭은 「학칙」에 의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②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「고등교육법」 관련 규정 및 교육부 설치인가 기준에 따라 정원 외로 모집하며, 연간 모집인원은 학칙에서 정한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5조(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연구회) ①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 심의 및 의결, 입학 사정, 자체평가 등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 라고 한다.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, 2023.10.16.>

②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편성, 교육과정 운영 점검, 수요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학과에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연구회(이하 “교육과정 연구회” 라고 한다.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>

③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연구회는 산업체 인사를 50%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,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따로 둔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수업연한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전문대학교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: 2년 이상
- ② 전문대학교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: 1년 이상

제7조(지원자격) 전공심화과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 :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위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자로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 산업체에서의 재직경력이 1년 이상인 자 <개정 2021.12.01.>
2. 산업체 경력 없는 과정 :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위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자. <개정 2021.03.01.>

제8조(동일계열의 범위) ① 동일분야(계열) 관련학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전문학사과정의 이수교과목을 심의하여 관련학점을 50%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12.01.>

② 동일분야(계열)내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관련학점을 50% 이상 이수한 경우를 학과 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학점 관련성이 50%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학점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별도로 전문학사과정에서 이수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>

③ 관련성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.

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산업체의 범위 및 관련분야) 산업체와 관련분야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.

제10조(입학지원서류)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 <개정 2021.12.01.>
2.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
3. 산업체 재직증명서(4대보험 관련서류,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) 및 경력증명서(산업체 경력 있는 과정 지원자만 해당)
<개정 2021.03.01.>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11조(입학전형방법) ① 서류전형으로 실시하되, 필요시 면접고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전형방법은 모집요강에 의한다.

②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학년도 모집요강에 의해 정하며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.

<개정 2021.12.01.>

제12조(입학자격 재직기간의 기준산정 시점)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재직기간의 기준산정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대학교(산업대학교·교육대학교, 원격대학교, 방송·통신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)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: 해당 학교 입학 이후 <개정 2021.12.01.>

2.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(전문학사학위, 학사학위)를 취득한 자 :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이 완료된 때 이후 <개정 2021.12.01.>

3. 독학사학위제도를 통해 학위(학사학위)를 취득한 자 : 『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』 제5조제1항 각 호의 인정 시험 중, 학위 취득을 위해 응시한 최초의 시험을 합격한 때 이후 <개정 2021.12.01.>

제13조 (학생모집 시기) 학생의 모집 시기는 모집요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14조(미등록 총원) 학생의 미등록총원은 매년 교육부가 지정한 날까지로 한다. 다만, 2학기에는 할 수 없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제15조(교육과정의 편성) 모집단위별로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연구회에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. <개정 2021.03.01.>

제16조(교육과정의 운영) 전공심화과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시장환경변화 등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용
2. 전문학사과정의 교육과 연계된 전공심화교육에 중점

제17조(학급의 편성) 40명 이하의 별도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.

제18조(수업의 형태) 주간, 야간, 주말반 중 모집단위별로 총장이 정하여 운영한다.

제19조(최소이수학점) 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에서 인정 취득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20학점미만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초과학기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9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.
<개정 2021.03.01., 2021.12.01.>

제20조(전문대학교과정 인정학점) 전문대학교 또는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의 이수학점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75학점,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1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21조(학위명칭 및 수여) 학사학위의 종류는 4년제 대학교 또는 산업대학교의 학위를 준용하여 학사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1.12.01.>

제22조(학사관리 원칙) 학기, 수업일수, 휴·복학, 자퇴, 제적, 재입학, 학생활동, 상벌 등은 본 대학교 「학칙」 및 「학칙 시행세칙」에 의하여 전문학사과정과 동일한 학사관리를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23조(자체평가) 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학과는 매 학년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<삭제 2021.03.01.>

제24조(모집정지) 전공심화과정 운영학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모집정지를 한다.

1. 당해연도 신입생 총원율 0% 학과
 2. 2년 연속 신입생 총원율 50% 또는 신입생 총원인원 7명 이하인 학과
- [본조 신설 2022.05.01]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세부사항의 결정은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최소이수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학년별 최소이수학점 변경 기준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, 이전 입학생의 경우,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.

1.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: 140학점
2. 학기별 최소이수학점은 1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1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.
단, 초과학기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이수 할 수 있다.

제3조(전문대학교과정 인정학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전문대학교과정 인정학점 변경 기준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, 이전 입학생의 경우 2년제학과 80학점, 3년제학과 졸업자는 12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